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2 선고 2021가합3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렬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성돈, 정소용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3. 8.자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8. 3. 12. 접수 제186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5.부터 2018. 4. 12.까지 3차례에 걸쳐 C이 실질적으로 시행 및 분양하는 상가건축사업(D, E, F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운용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투자약정에 따라 2017. 11. 15. 1,000만 원, 같은 달 22. 9,000만 원, 2018. 4. 12. 1,000만 원, 같은 달 18. 1억 원, 2018. 8. 26. 1억 3,000만 원 등 합계 3억 4,000만 원을 C 측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C은 2018. 3. 8. 피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C, 수탁자를 피고, 공동우선수익자를 H조합 및 I조합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3. 12. 접수 제18613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상가건축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 소멸시키는 신탁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이 2019. 12. 24.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편취범행으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24. 선고 2019고합21 등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로서는 늦어도 위 유죄판결 선고 무렵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8. 3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존재 및 그것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적격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수익자인 H조합 및 I조합은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신탁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1항 본문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탁법 규정은 수탁자의 악의를 사해신탁 취소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사해신탁 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나 수탁자의 당사자적격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사해신탁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H조합 및 I조합이 선의라는 취지로 다룬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신탁법 규정에 따르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인 H조합 및 I조합이 선의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7,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인 H조합 및 I조합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우선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① H조합 및 I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C과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출거래 외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H조합 및 I조합의 C에 대한 대출 관련 자료(을 제2호증)상으로도 C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신용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내용은 없다.

③ H조합 및 I조합은 C에 대한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담보가치를 확인하고, 위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액은 합계 114억 원에 이르는 반면, H조합 및 I조합의 대출금은 각 48억 원과 7억 원에 불과하여 H조합 및 I조합과 C의 대출 거래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그러한 상황에서 H조합 및 I조합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에게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최해진, 판사 이호태

별지